

의안번호	2217279
의 퇴 인	조계원의원
회 답 일	2026.5.13.
추계번호	26B129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3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38조의8 신설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국가산업단지와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국가의 보조금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해당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의무규정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3항) 1.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3. 기반시설 개량 비용 4.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29조의3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8조의8 신설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2. 상세사유

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안 제29조의3)

-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또는 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해당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유지보수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함에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사항은 기존 지방정부 부담이 중앙정부 부담으로 이전하는 재정변동 사항으로 총재정의 측면에서 순증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비용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 수요, 노후도, 시설별 보수 등 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 이를 알 수 없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등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국가의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폐수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국비 또는 공공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9조의3에 따라 안전의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한 실적은 부재한 상황임

나.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신설(안 제38조의8 신설)

□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등을 세입으로 하며,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기반시설 개량비용 등을 세출로 규정하고 있어 세출 규모가 세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며, 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더하여 추가 수행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출의 순증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